

의안번호	제 2765 호
의 결 연 월 일	2024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	--

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4. 1.

상죽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2765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1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상죽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4. 8. 12.로 만료됨에 따라
위탁 사업자 선정·계약 필요

2. 위탁근거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 제4조
- 다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 제6조

3. 위탁내용

가. 시설현황

○ 시설명: 상죽암 오토캠핑장

○ 위치 및 규모

- 위치: 하이면 덕명리 15, 23-1, 12, 월흥리 962, 산38-4
- 규모: 부지면적 15,880m²
- 주요시설

사이트	기타시설	비 고
85면	관리동 1동 / 화장실·세척장·샤워장 2동	1캠핑장 45면 2캠핑장 40면

나.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4. 8. ~ 2027. 8.(3년)
- 위탁 예정가격: 77,704,000원/1년부가세포함
- * 산정용역을 통한 위탁료 산출
- 위탁방법: 공개입찰
- 위탁내용: 상죽암 오토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4. 적정성 검토 및 관련법규: 붙임 참조

붙임

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

☐ 검토항목: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

연번	검토항목	검토결과	비고
1	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관리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수행함이 타당	적정
2	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캠핑장 이용요금, 환불규정, 이용수칙 등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규정된 금액 및 내용을 적용받아 공공성 및 안정성 타당	적정
3	경제적 효율성	위탁운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,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효율성 타당	적정
4	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고성으로 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을 잘 알고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캠핑장 상황에 맞는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됨	적정
5	성과측정의 용이성	정기적인 운영 현황 보고를 통해 얻는 자료를 통합하여 성과 측정 용이	적정
6	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예약시스템 운영, 실적보고, 수지 분석,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하여 계약 체결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됨	적정
7	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	팬데믹 이후 야외 여가 산업 성장, 그로인해 캠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	적정

□ **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**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□ **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**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2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3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군수는 제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